

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#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□ 개정사유

- 가.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,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하며
- 나. 현실성 없는 개인택시차고 보유 의무 제도를 면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

## □ 주요내용

개인택시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차고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.

(안 제37조)

## □ 참고자료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3쪽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장(제37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9장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

제37조(보유차고 면적기준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9장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제37조(보유차고 면적기준) 「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
##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<input type="radio"/> 제14조(면허기준 등) <input type="radio"/>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붙임 참조”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 당 없 음”
관련자료	“해 당 없 음”

# 관 련 법 령 발 취

## 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4조(면허기준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운송부대시설 등(이하 "시설등"이라 한다)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
2.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,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
3.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

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별표 2의 2

업 종	대당 면적(최저)
가. 시내버스운송사업,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	
1) 대형	36㎡ ~ 40㎡
2) 중형	23㎡ ~ 26㎡
3) 소형	15㎡ ~ 18㎡
나. 택시운송사업	
1) 일반택시	13㎡ ~ 15㎡
2) 개인택시	10㎡ ~ 13㎡(다만,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)